

#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

제정 2010. 2. 8  
개정 2026. 3. 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55조의 2에 의거하여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교원의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‘명예퇴직’이라 함은 교원이 정년 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신청자격) ① 본 대학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정년보장을 받은 교원 중 만 55세 이상인 교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근속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근속기간의 계산은 본교 교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에 의한다.
2. 휴직 및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신청의 제한)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명예퇴직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.

1. 제6조에 의한 공고일 현재 정년의 도래가 1년 이내인 자
2.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
3.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에 있는 자
4.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인 자
5. 기타 명예퇴직의 신청이 부적당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

② 총장은 교원의 수급계획 및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명예퇴직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5조(명예퇴직수당) ① 명예퇴직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명예퇴직수당은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.

제6조(공고 및 신청) ① 총장은 명예퇴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

을 받아야 한다.

② 교무처장은 학기말 (2월 말, 8월 말)로부터 역산하여 4개월 전까지 ‘명예퇴직 허가예정 인원’, ‘신청기간’, ‘명예퇴직수당 지급’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원은 전항의 공고 후 1개월 이내에 인문사회학부장 또는 각 학과의 학과장 (이하 “각 학과의 장”이라 한다)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: 2026.3.1.)

④ 명예퇴직은 학기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심의·결정) ① 교원으로부터 명예퇴직을 신청 받은 각 학과의 장은 학과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에 해당 교원의 명예퇴직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②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1. 장기근속 교원
2. 연령
3. 기타 신체 또는 정신건강 상의 사유

③ 명예퇴직 신청자가 심의·결정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심의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.

제8조(결정의 통지) 명예퇴직 대상자가 결정되면 교무처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학과의 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직원 제출) 퇴직 대상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퇴직수당 지급시기 및 수령권자) 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0년 2월 8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

## 별표 1

## 명예퇴직수당 산정 기준

정년 잔여기간	적용기준
10년	$(\text{퇴직당시 총 연봉} \div 12) \times 60\text{개월}$
5년 이상 ~ 10년 미만	$\{\text{퇴직당시 총 연봉} \times (60 + 4 \times A)\% \div 12\} \times 60\text{개월}$ * A = 정년 잔여연수
5년 미만	$\{(\text{퇴직당시 총 연봉} \times 80\%) \div 12\} \times \text{정년 잔여월수}$